

2022년도 제1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6. 13.(월요일), 16: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송수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10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05건(안건번호 제2022-57675호~5897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57675호~57688호(순번 1번~14번)은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안건번호 제2022-57689호~58979호(순번 15번~1305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41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III.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12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10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1호 안전 회의록은 비식별 처리 후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2-112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49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430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모두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1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는 블로그 게시물 총 14건임.

□□□, ◆◆◆◆ 블로그에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 ‘◆◆◆◆’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불법 복제된 웹툰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는 다양한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접속 가능한 11개 사이트 중 8개 사이트는 2022년 우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되었음. 각 사이트는 모두 해외 서버에 소재하고 있으며, 불법복제된 웹툰을 다량 제공하고 있음. 최근 법원은 해당 사이트들과 유사한 웹툰 불법복제물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하여 국내 웹툰 플랫폼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배타적발행권자인 플랫폼의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직접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의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판단할 수 있음.

한편 각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는 보호원 시정권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서버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우되는 주소 업데이트 사이트 또한 해외서버 또는 국내서버에 소재하고 있는 설치형 블로그로서 OSP의 시정권고 이행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음. 따라서 링크게시물의 경우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원천게시물에 직접 시정권고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이행이 가능한 온라인서비스에 소재중인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는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구함.
- A 위원: 최근 이러한 주소 알림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심의 상정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글은 일반인이 게시하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에서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안임. 이러한 게시물의 게시자들은 의견상 일반인

으로 보이는데, 불법 웹툰을 향유하는 일반인인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운영자 등 관련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14번에 대해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지?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14번은 원안대로 시정권고 가결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5번 내지 순번 130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총 2,416개 게시물임.
(방송 '기묘한 이야기(2016)'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0번은 '기묘한 이야기(2016)'임. 새 시즌이 공개되어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사안임. 넷플릭스 독점 제공 중인 방송물의 한 시즌 전체를 2,430포인트에 판매중임.
(영화 '마녀'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20번은 웹하드에서 제공중인 영화 '마녀'임. 영화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게임 '엘든 링 ELDEN RING (2022)'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18번은 웹하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게임 '엘든 링'임. 시중에서 5만원 가량에 구매할 수 있는 게임을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무설치 버전으로 변형하여 제공중임.

(영화 '★★: ★★★'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긴급 대응 저작물로 지정되어 신속 심의중인 영화 '★★: ★★★'임. 영화관에서 촬영한 '캠버전'으로 유통되고 있음.

해당 4건을 포함하여 순번 15번부터 순번 1305번까지 총 2,416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5번~130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57675호~57688호(순번 1번~14번)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로 가결하고, 그 외 안전번호 제2022-57689호~58979호(순번 15번~130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1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6. 20.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